

-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-

심사보고서

○ 일 시 : 2023. 12. 18.(월) 10:00

○ 장 소 : 본회의장

○ 안 건

-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의회운영위원회

(위원장 유재호)

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23. 11. 2.
- 나. 발 의 자 : 김종복 의원 등 7인
- 다. 회부일자 : 2023. 11. 3.
- 라. 상정일자 :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2023년 12월 7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김종복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의원 출석정지, 경고, 사과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(이하 “의정비”)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일 경우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하는 규정을 마련함.(안 제2조)
- 의원이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함.(안 제2조의2)
- 의원이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2분의 1을 감액하는 규정을 마련함.(안 제2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에 따른 출석정지 등의 의정활동이 제한됨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 제한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수정안요지 : 없음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8. 소수 의견요지 : 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